

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(제21조제2항 관련)				처리기간
				시·군·구 2일
신청인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—
	③ 주소	시·도 시·군·구 읍·면·동· 리·동 번지		
④ 어업의 종류			⑤ 양식방법	
⑥ 면허번호		제 호	⑦ 포획·채취물, 양식물	
⑧ 면허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년)		
⑨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		. . .부터 . . .까지 (년)		
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구비서류 : 없음				수수료
				1,600원

※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

(뒷면)

